

| 보건복지부 | 보 | 도 참 | 卫 | 자 료 |
|----------------------|--------------|----------------|----------|--------------------------------|
| 배 포 일 | | 2020. 10. 21 | l./(총 18 | 3 매) |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 팀 장 담 당 자 | 박 은 정 한 연 수 | | 044-202-1711 044-202-1714 |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 과 장 담 당 자 | 김 성 훈 박 현 수 | | 044-200-2293 044-200-2295 |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 과 장 담 당 자 | 김 정 일 유 효 연 | 전 화 | 02-2113-7660 02-2133-7669 |
|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 단 장 담 당 자 | 안 광 찬 이 은 실 | | 032-440-7801 032-440-7849 |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과 장 담 당 자 | 윤 덕 희 최 문 갑 | | 031-8008-5420 031-8008-5422 |
|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 팀 장 담 당 자 | 김 정 숙 조 현 숙 | | 044-202-1720 044-202-1723 |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 팀 장 담 당 자 | 송 준 헌 윤 정 희 | | 044-202-1750 044-202-1755 |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과 장 담 당 자 | 나 기 호 양 찬 윤 | | 044-201-3823 044-201-3832 |

코로LHI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방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방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부산 지역을 비롯하여 요양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시설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평생친구

걱정이 더욱 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위중 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통계적으로도 사망률이 높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원 조치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권역 별로 치료 인력이나 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 전반**에 대해 **선제 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청에게 그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WHO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 '환자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WHO, 10.15)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 이후 **국민들의 외식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찌개나 반찬 등 음식을 함께 먹는 우리의 식문화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 정부도 지난 5월부터 식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식당에 대한 방역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과 행동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식문화 개선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 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칙 마련 등 **감염병 예방** 노력과 함께 적정 진료절차 마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대상자별 순차적 재개 (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건 등록)
-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 * 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

- · (진입·접수) 의료기관 진입 전 또는 진입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페이스쉴드 착용
- · (진료대기) 대기 공간 내 최소 1m 이상 환자간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최대한 동선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운영
- · (진료)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청진, 시진 등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 * 단, 인플루엔자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필요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착용 후 실시토록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내원 안내 등 실시

2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 및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 10월 19일부터는 **수도권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감소추세**이나 **시설의 집단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 □ 이에 따라 10월 22일(목)부터 11월4일(수)까지 2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평생친구

-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은 1,476개소 전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 하고,
-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는 복지부· 지자체·건강보험공단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 **정신병원은 폐쇄병동 423개소 전수**를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조사함 예정이다.
- □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해 갈 것이다.

3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고위험시설 등 특별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확진자의 감소세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붙임1 참고)
 -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이외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다.





- 또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 정부는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식당, 카페(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300만 원)부과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한 행위가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에는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
 - *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 가능 등 방역수칙 적용
- 이와 함께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안내**· **교육**하고, **방역수칙 준수 이행을 독려**하는 등 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 시설 내 방역수칙 안내 홍보 포스터 부착 등
- □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우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방역 대응반"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조치에 맞도록 방역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 특히,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학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는 한편,
- **종사자에 대한 중상확인**과 **유중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즉시 퇴근 조치**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평 생 친 구

- 만일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 정도에 따라 사후 조치(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 시·군·구청 각 1인이 참여하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를 지속 안내하는 한편 차량 소독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 전세버스 방역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10.17.~11.15.)동안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 (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을철 여행을 대비하고 있다.
- **식약처**는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민자고속도로 포함) 220개소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 우선 운영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평 생 친 구

-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하여,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 국·공립공원 81곳, 유원지 73곳, 기차역 262곳, 터미널 281곳, 공항 15곳 등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정부도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전시산업 동향 및 방역관리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로부터 '전시산업 동향 및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시산업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무역 인프라이며 관광·숙박·외식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 국내 전시산업은 5월 8일에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8.19.) 이후 각종 전시회가 취소, 연기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는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위한 3차 추경(60억, 부스참가비), 개최 전시회 지원항목 확대*(본예산 22억) 등 기존에 수립했던 대책(6.10 확대무역전략회의, 9.15 실물경제점검회의)의 추진을 통해 전시회 개최의 정상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 * (현행) 해외바이어 유치만 지원 → (확대) 임차료·홍보비·부스장치비도 지원







평 생 친 구

- □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10.12)됨에 따라, 국내 전시회가 10월 15일 '부산 코리아빌드(벡스코)'를 시작으로 재개되었다.(12월까지 총 131건 예정)
- 이에, 정부는 국내 전시회의 개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관련 지자체에 전시회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 전시업계에도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전시행사)"과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준수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촉구하였다.
- *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 (4㎡당 1명)
- □ 한편, 국내 전시장은 높은 충고(10m 내외), 공조시설 가동, 참관객 트래킹 등에서 유통매장 등 다른 대형시설에 비해 뛰어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 집합금지 조치 전 전시회 개최가 허용되던 시기에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음

5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놀이공원과 유원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10월 21일(수)부터 10월 28일(수)까지 푸드트릭,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프랜차이즈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2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식품 위생을 함께 점검한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20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직업훈련시설, 학원 등 17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소독 및 방문자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 앞으로도 매주 이들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방역기 대여, 소독약 무상 지원 등 방역 지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19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 관내 35개소 장례식장을 점검하여 유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사전 설명 및 협조동의서 작성 여부, 발열체크, 방문객리스트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강화 지침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 **경기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관광객 집중을 대비하여, 10월 17일(토)부터 11월 29일(일)까지 도(道)내 주요 관광지 21개소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 종합유원시설 3개소(에버랜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법정관광지 4개소(신륵사, 장흥, 소요산, 용문산), 야영장 14개소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며, 10월 19일(월) 기준 고위험시설 3,18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3,311개소를 점검한 결과 핵심방역수칙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23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0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5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8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2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을 고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10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1,032개소, ▲ PC방 732소 등 34개 분야 총 9,89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7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 2.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 구분 | | 조정 방안(10월 12일부터 적용) | | | | |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 | | |
| 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 | | |
| 국공립 |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 | | | |
| 고위험시설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 | | |
| 이외 다 중 이용 시설 |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 | | |
| ন্ত্ৰ ই |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 |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 운영 가능 | | | | |
| 기관,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 | | |
| 기업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 | | |











평생친구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별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